

1. 개정이유

개정 자살예방법('24.7.12. 시행 예정)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관련 하위 법령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)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은 개별 면담, 강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생명존중의 중요성 2.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3.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4.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5.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 6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(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)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	제4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) <삭 제> <삭 제> 제5조(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) <삭 제>

요한 프로그램(이하 이 조에서 “상담·교육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·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